

Nicholas Kaldor의 An Expenditure Tax

이 필 우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먼저 이 책의 제목을 직역하면 “하나의 지출세”(An Expenditure Tax)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우리는 개인종합소비세(personal graduated consumption tax)로 표현해 보았다. 왜냐하면 년 소비액을 개인적으로 종합 측정해 이를 누진과세하는 소비세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는 개인 종합 소득세와 과표만이 다를 뿐 같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개인 종합 소비세란 의미는 Kaldor도 이 책의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¹⁾ 즉 서론에서 “a graduated tax on personal expenditure”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출세를 개인적 소비세로 지칭하고 있음은 미국의 Andrews(1974) 및 Bradford(1996) 등은 모두 expenditure tax라 하지 않고 individual consumption tax 로 기술하고 있다.²⁾ 그러나 특히 Andrews의 경우 그는 개인 지출세(Personal Expenditure Tax)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³⁾

이 책은 약 60년전에 출간된 세제개혁에 관한 책이다. 그러한 개혁적인 세제발상은 오늘날 소비세제의 뿌리와 근본을 이루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책을 1962년에 번역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른경제동호회의 주선으로 번역(이필우 역)되어 최근자에 출판할 것으로 계획중이다. 동호회 고문 박종규 회장은 그간 한국에도 지출세를 도입해 효율성과 간편성을 지닌 세제개혁이 요구된다고 수차례 걸쳐 발표 한 바 있다.

지출세를 한국에 최초로 소개한 것은 1994년의 조세론 교과서 였다.⁴⁾

오늘날 시대는 바뀌어 소득에서 소비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Kaldor의 지출세는 오늘날 소비

1) N. Kaldor, An Expenditure Tax, Gregg Rivivals, 1955, p.12.

2) Davoid F. Bradford, The Case for a Personal Consumption Tax, in: Joseph A. Pechman Ed. What should be Taxed: Income or Expenditure?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80.

3) William D. Andrews, A Supplemental Personal Expenditure Tax, Pechman, ed. Ibid, p.127.

4) 李弼佑, 租稅論, 法文社, 1994, 695面.

시대에 걸맞는 세제일 수도 있기에 이러한 책을 뒤 늦게나마 소비세제의 古典으로도 볼 수 있어 이에 관심을 가지면서 늦게나마 세상에 이 책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일본 번역책의 제목은 종합소비세라고 했다(時子山常三郎 監役, 綜合消費稅, ニコラス カルドア著, 東洋經濟新聞社, 1962). 그러나 본인(역자: 이필우)은 이러한 제목의 번역에 반대하고자 한다. 그 이유를 살펴 보자. 우선 밝혀야 할 것은 소비세라고 하면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생각한다. 우리의 부가세는 간접세인 물세이다. 그러나 여기 Kaldor가 제시하는 소비세는 물세가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 과세되는 소비세이다. 즉 년 총 소비액을 과표로 해 필요경비는 공제하고 과세하는 일종의 인세이다. 세금의 부담자는 소비자인 개인인 것이다. 이는 소득세가 인세인 것 처럼 지출세라는 소비세도 개인이 세부담을 하는 인세요 직접세이기도 하다. 즉 과세객체는 재화나 상품이 아니라 소비하는 개인인 것이다. 직접세인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이는 물건 값에 포함되고 있어 물세이고 간접세이다. 그러나 Kaldor의 소비세는 연간 소비액을 총계해 과표로 정하고 공제적용 후 세율적용 해 과세하는 소득세와 같은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는 인세인 동시에 직접세라고 해야 할 것이다. 소득세와 다른 것이 있다면 과표가 소득이 아니라 소비지출에 있다는 사실이다. 사업자의 경우 판매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남겨진 수입에 대해 일종의 수익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은 장래 어느 시기에는 다 소비되어질 잠재적인 소비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소비세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소비되기 전에 과세되는 前納型 支出稅(prepayment of expenditure tax)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의 지출세는 소비세로 간주되고 있다. Bradford의 보상세 또는 임금세는 일종의 부가가치로 보며 이러한 구매력의 부가가치는 소득개념과 같다. 그러나 이를 소비의 부가가치로 간주 소비세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사업세(business tax)는 비용을 공제한 잔여수입도 소비개념으로 간주 소득형 부가가치로 본다. 그 결과 이러한 수입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와 같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이는 일종의 부가가치세로 간주하고 있다. 소득세는 과세후 소득이 감소하나 부가가치세는 과세후나 과세전 부가가치는 동등하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D. Bradford가 제시하는 X 조세는 소비세로서의 지출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⁵⁾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에 대한 과세는 면제되며 이를 장래 소비되어질 가공적인 미래소비에 대한 과세로 간조하면서 이를 전납형 지출세로 보는 것이다.⁶⁾

이러한 지출세는 두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과세객체와 과세표준이 바로 그것이다. 지출세의 과세객체는 개인이며 과세표준은 개인의 연간 소비의 총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한 소비액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지출세는 과세객체만을 강조한 개인소비세(individual consumption tax)로 표출되고 있으며 일본은 과표만을 강조한 종합소비세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한국에서는 지출세를 과세객체와 과세표준을 표현하는 “개인종합소비세”(individual global

5) D. Bradford, Taxation, Wealth, and Saving, The MIT Press, Cambridge, 2000, p.67f.

6) D. Bradford, Taxation, Wealth, and Saving,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2000, p. x, p.51.

consumption tax)라고 함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종합소비세는 사업자 과세에 있어 과세객체가 법인일 수도 있으며 개인일 수도 있다. 만일 법인인 경우 개인종합세란 표현은 부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번역서의 제목은 지출세라는 Kaldor의 원래의 제목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지출세로 칭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선 이 책의 내용은 원래 Kaldor가 영국 왕립세제개혁 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Taxation of Profits and Income) 위원으로 피택된 이래 동위원회의 첫 번째 개혁안이 1951년에 정부에 제시되었으며 동 개혁안의 핵심은 주로 Kaldor가 주장했던 지출세 내용이였다. 그러나 영국 재무성의 경비지출에 대한 범위의 확정이 불분명 해 부결 되었다. 그는 4년 후 지출세의 혁신적인 세제개혁 내용을 이론과 실제면에서 설파했다. 그러한 내용은 바로 1955년에 간행된 책, “An Expenditur Tax” 였다.

본서는 주지 하는 바 2부로 나뉘어져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6장까지는 지출세의 원론적 해설로 저축과 조세와의 관계, 세금과 투자행태, 법인세, 및 경제진보에 있어 세제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으며 2장에서는 실제 지출세의 개혁을 위한 세제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재정학 교과서에서도 지출세의 저축, 노동,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으로 일반화된 이론이기도 하다.⁷⁾ 여기에서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영국에서의 지출세는 어떤 모습으로 도입되고 있는지? 지출세의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인지를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저축된 부분에 대해 비과세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시키자는데 있었다. 문제는 그러한 세제의 변동을 어데서 시작할 것인가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 점차 그 성공도에 따라 큰 부분으로 진척해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전체적인 지출세로 이행 하고자 했다.

이러한 개혁절차는 결국 당시 소득세의 부차적인 과세형태였던 소위 소득세의 가산세 또는 특별 부가세에 대해 지출세를 적용코자 했다. 그런 특별 부가세(surtax)는 한국의 소득할 부가세와도 같은 지방세와도 유사한 것이었다.

소득에서 우리는 소비를 한다. Kaldor는 이를 지출이라고 했다. 왜냐면 소비는 개인이 일용품을 구입해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가계의 소비지출이라고 했다(consumption expenditure). 한편 사업자나 기업가의 경비지출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지출중 투자지출은 면세토록 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출중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은 과세토록 한다. 기업내에 축적되 있는 자본저량에서 인출되는 자본이 소비로 쓰여지는 경우 이에 과세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는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가계의 소비지출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가 또는 자영업자들의 자본의 소비지출이 있는 것이다. 허나 자본소득 또는 자산의 실현액은 모두 지출세의 과포

7) David N. Hyman, Public Finance, Contemporary Application of Theory and Policy, Thomson, South Western, International Student Edition, 2005, pp.625-637. Harvey S. Rosen and Ted Gayer, Public Finance, McGraw-Hill, 9th ed. 2010, pp.489-494.

를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소득의 과세는 후에 제시되는 H.-R.의 Flat Tax 안에서는 비과세되고 있으며 대신 공제는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제의 간편성과 세부담의 경감을 위한 최적의 세제로 홍보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Kaldor는 이 두 소비지출을 합쳐 지출세(Expenditure Tax)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이 지출세를 개인 소비세(individual consumption tax)로 부르고 있다. 이는 가게와 사업가는 모두 개인으로 간주 개인이라는 과세객체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소비세는 양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Kaldor의 지출세의 개념에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소비세라고 한 일본역자의 표현은 가게 및 사업가의 소비지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합이란 뜻은 년 소비를 합한 소비액을 과표로 하고 있음을 뜻 한다. 그래서 두 집단의 소비과세로서 종합소비세라고 했다. 마치 이는 우리의 종합소득세에 대칭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서구식 표현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개인소비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개인을 법인과 혼용함을 잘못이기에 이는 개인이나 법인이거나 간에 돈을 지출한다는 의미에서 지출세라고 함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⁸⁾

지출세라고 했다. 한국 납세자에게는 개념적 소원함이 있어 미국의 표현방식인 개인소비세가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과세단위를 중시하는 개인 소비세라고 했지만 과표의 의미는 상실되고 있다. 이에 과표의 특성을 표현하는 개인종합소비세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따라서 본서에서 우리는 지출세 또는 개인 조합소비세의 두 개의 명칭을 동의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에서 우리는 먼저 번역과정에서 감지된 소감과 Kaldor의 생애, 학문적 세계와 사상, 특히 왜 소비지출세를 주장했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해 볼까 한다.

Nicholas Kaldor는 Hungary Budapest에서 1908년에 출생했다. 그후 1927년에 영국으로 유학을 해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공부를 끝내고 그곳에서 교직생활을 한다(1947). 그후 Cambridge 대학으로 옮겨 1966년에는 Kings College의 Fellow 직을 맡으며 정식으로 교수직을 맡게 된다. 그리하여 1974년에는 Newham의 남작이라는 귀족적 작위를 받게 되며 Baron Kaldor가 된다.

경제학에 있어 그의 주요 관심은 경제정책에 있었다. 방법론적으로 그는 이론에 집중하지 않고 이론의 실천적인 실제측면을 중시하는 경험적 귀납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의 8개에 달하는 그의 논문집 즉 Collected Economic Essays는 그의 주옥같은 경제사상과 정책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30년대에는 당대의 거장 석학인 J. R. Hicks, F. A. von Hayek, L. Robbins, 및 Scitovsky 등과 격의 없는 사이로 많은 학적 교류가 전개되었다고 한다. 그는 초기 신고전학파의 자본의 우회적 순환이론(roundaboutness of capital)을 신봉하면서 균형이론의 완

8) 그러나 지출세로 법인세를 대체한다면 미국의 경우 이를 개인소비세로 표현 할 수도 있다.

전경쟁을 부인하면서 불완전 경쟁을 주장했다 그래서 거미집 모형(cobweb thorem)에 기초한 이론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방법론적으로 보아 그는 선형적인 논리(linear logic)에 의지하지 않고 non-linear 비선형적 사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 당위성 내지 사회적 정의에 크게 좌우되는 개혁적인 경제학자였다.

그는 특히 신고전파의 성장이론을 부인한다. 즉 자본이 이윤의 확대를 가져와 나아가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본축적과 그의 생산적 이용이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했다. 이에 있어 투자는 결정적인 변수로 역할하는데 Keynes 처럼 낮은 이자율과 투자는 역함수관계를 가진다는 견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기업가의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를 강조했다. 그리하여 그는 경제현상을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망해 그에 기초한 이론을 주장했던 것이다.

특히 그의 금융이론은 특이하다. 통화의 공급, 수요의 수급균형이론을 부인한다. 즉 중앙은행의 통화팽창은 이를 수요하는 투자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 있어 통화수급은 불균형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시장의 돈은 개인 즉 Scrooge 욕심장이는 많은 돈을 장롱에 쌓아 두고 투기만을 노려 시장을 교란할 것이다. 마치 한국의 금융시장과 같이 투기적인 유동성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늘 불균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Kaldor는 지적한다. 1982년에 간행된 *The Scourge of Monetarism*은 이를 대변하고 있다. 통화주의가 초래하는 천재지변은 엄청 무서울 것임을 예언하기도 했다. 그의 예언은 그의 사후(1988) 약 10년 후에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나타났다. 한편 그후 2008년의 미국의 금융위기는 공황에 근사한 것이었다.

이러한 통화주의론적 불균형속에서 기업은 실물투자해 돈을 벌지만 그러나 생산성은 상승하나 수요부족으로 재고만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후기 Keynes 학파라고 볼 수도 있다. 금융부문의 누적적인 불균형은 결국 세계화 경제에서는 금융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며 세계에 선진산업국가와 아니 고부가가치의 전자산업 위주의 선진국가들과 후진적인 농업중심의 개도국간에는 심한 양극화 현상이 전개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Polarization Thesis).⁹⁾

첫째, 지출세의 주장을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이미 16세기에 영국의 정치철학자 Thomas Hobbes에 의해 주장되었다.¹⁰⁾ 그 후 고전파 경제학의 거목 John Stuart Mill(1848), Alfred Marshall(1890) 및 A. C. Pigou(1925) 등은 모두 소득세의 불공평성을 비난하면서 지출세를 선호한 바 있다. 허나 지출세를 정면으로 내 세워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주장한 학자는 미국의 Irving Fisher(1939)였다. 그 후 미국에서는 W. Andrews 및 D. Bradford가 소비세를 주장한 바 있다. 구라과에서는 지출세의 도입시행을 영국정부에 건의하면서 책까지 발간한 학자는 Nicholas Kaldor(1958) 였다.

9) M. Forstater, *Economics, Little Book of Big Ideas*, 2007, Chicago Review Press, p.83.

10) Thomas Hobbes, *Leviathan: On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 Collier Books, MACMILLAN, Publishers, New York, London, 1962, p.255.

둘째, 이러한 소비세의 과표는 다음처럼 결정된다. 포괄적 국민소득(Y)은 일정기간의 소비액(C)과 부의 순증(ΔW)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소비세의 과표(C)는 소득(Y)에서 부의 순증(ΔW)을 빼주어야 한다. 즉 $C=Y-\Delta W$ 이다. 여기에서 부의 추가적 증분은 즉 저축은 비과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출세 도입의 근거를 Kaldor는 공정성과 효율성에 두고 있다. 즉 부유층의 소비수준은 필요한 사회 소비수준을 초과하여 사치스런 호화판 소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소비수준에 대한 과세는 피세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부유층의 소비의 원천은 자본 또는 자산이며 그 간에 축적된 자본과 자산에서 인출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시키고 있다. 결과는 두 측면에 부정적인 부작용이 과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소비에 대한 과세는 없으며 한편 그러한 소비로 인해 투자의 원천이 될 자본이나 자산규모는 축소되어 사업활동규모는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공정성의 배치현상이며 후자는 효율성의 저해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존의 세제는 공정성과 효율성면에서 부정적인 세법으로 비난 되었다. 이러한 근거에서 Kaldor는 소비 지출세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는 공정성과 아울러 효율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 세제로 1978년 영국의 Mead 보고서로 세제개혁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셋째, 흔히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공정성(justice)과 효율성(efficiency)은 상쇄(offset)된다고 교의하고 있다. 허나 Kaldor의 지출세의 도입은 이 상반되는 정책 기준이 상쇄 대신 서로 도와 상생하는 조화효과를 가져올 것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소득이나 저축이 과세되지 않고 소비에 과세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즉 부유층의 고수준의 소비에 누진율로 고과세 하면 과세의 공정성은 증진될 것이며 한편 소비의 감축이 초래되 저축이 늘어날 것이기에 이는 투자의 원천인 자본과 자산의 축적으로 경제효율성은 증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공정성의 제고로 효율성이 증진되는 상생적인 체계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Kaldor는 지출세와 경제성장을 논의하고 있는데 결국 저축을 감소시키는 소득세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Marx의 잉여가치의 처분방식을 논하고 있다. 비용을 초과하는 가치 창출은 노동의 산물이지만 창출된 이 잉여가치를 재투자하며 사업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잉여가치의 투자를 위한 배분은 확대재생산을 가져와 성장과 경제발전을 약속함을 Marx는 주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잉여가치를 기업이 저축과 자본축적에 활용한다면 경제규모의 확장과 확대재생산이 전개될 수 있어 Marx는 이러한 생산적인 잉여가치의 활용을 환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본주의를 혐오하고 증오했던 것은 바로 부유층에 의한 잉여가치의 비생산적인 처분이었다. 노동자의 귀한 노동으로 창출된 잉여가치를 호화판 낭비적인 소비의 확대에 의해 경제의 순환을 확대재생산 대신 위축일로로 단순재생산의 경제순환을 혐오하고 증오했다는 것이다 (물론 Marx 경제학에 있어 잉여가치의 생산적인 활용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를 높여 결과 산업

예비군이 증가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지만서도...). 어쨌든 Kaldor가 Marx의 잉여가치의 확대재 생산적 처분방식을 시장경제에 긍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은 그의 방법론적 해안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¹¹⁾

다섯째, 과표의 결정은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해 제시해야 하며 여기에서 1년간의 소비액은 정확히 장부기재 또는 영수증처리가 되 있어야 한다. 소득에 가치재의 일부는 포함된다. 즉 복권당첨, 내기소득, 투기소득, 증여소득, 유증소득, 등이 포함된다. 허나 그림, 골동품, 고미술품, 등 그 가치 평가의 객관적 기준이 불확실한 가치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임금, 봉급, 이윤, 이자, 대금회수, 등은 소득에 당연히 포함된다. 이러한 포괄적 소득의 총액에서 저축, 투자, 자산 구입, 채무상환, 내구재구입액, 예금의 증대, 등은 소비하지 않은 부의 추가적 증분으로 인정 해 이를 소득에서 빼 주어야 한다. 그 결과 1년간의 개인의 총소비액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총 소비액은 과표로 결정되며 이에 시대적 사회적 여론에 적합한 세율을 누진적으로 설정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출세에는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어야 한다. 즉 가구당 기초공제,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공제, 등 소득세의 공제와 동일한 공제혜택이 있음으로 써 개인 종합 소비세는 명실 공히 그 뜻을 다 포괄하고 있어 종합소비세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표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모든 수입이 은행을 통해 입출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어야 할 것이다.

Kaldor는 이러한 종합소비세를 영국에 도입시행함에 있어 최초에는 소득세와 지출세를 병합한 혼합세로 과세할 것을 건의한다. 그리고 이는 소수 부유층의 고소득층에게만 적용할 것으로 했다. 이 경우 소득세의 과표는 과세시 모든 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표에 과세하며 순 소득을 과표로 하 나 소비세의 과표는 조 소비의 크기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출세는 이런 측면에서 피세의 길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를 억제감소하고 그 감소분을 저축으로 돌리면 이는 소비과표를 저축분 만큼 감소시킬 것이며 결과 소비과표는 감소되어 소비세를 덜 낼 것이다.

지출세는 소득세와 특별부가세(surtax)의 병합세이다. 소득세는 순과표를 채택하며 특별 부가세는 조과표를 적요한다. 그러나 후자는 저축에 비과세 해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며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할 것이다.

따라서 피세를 원한다면 소비를 감축하고 저축을 늘리면 저절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과소비는 줄어든 것이고 저축은 자연 늘어날 것임으로 일거양득의 국민경제적 이득을 실현할 수 있음을 그는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축으로 인한 한계이득과 세금을 덜 냈으므로 인한 한계이득이 같아질 때 까지 저축과 소비의 오감은 조절되어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도입시행의 초기단계는 합동세의 실험으로 성공적이면 신세도입의 적용범위를

11) N. Kaldor, An Expenditure`Tax, Ibid. p.185.

확대해 점진적인 도입시행을 건의하고 있음은 매우 적절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정성과 효율성이 상쇄됨이 없이 오히려 상생하여 공존하는 세제로 합리적인 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주지하는 바 50년대 중반기에 쓰여져 시대적 격차가 있어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영국의 재정제도와 한국의 그것과도 상당한 차이로 지출세의 한국에의 적용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허나 지출세(개인종합소비세)가 내포하는 기본가치는 우리 경제생활에 있어 근검절약과 저축을 존중하고 낭비적인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지극히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정신은 인간의 근본을 회생시키겠다는 윤리적 재정 및 조세사상의 기본 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책의 의미를 찾아야 될 것으로 믿고 싶다.

끝으로 이러한 지출세의 도입시행과 관련해 한국의 세제여건하에서 어떤 특성을 지닐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자. 그러한 논의는 주로 상식적이고 평이한 사고에서 접근해 보기로 하자. 종합소비세의 과세방식과 효과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자.

우선 도입초기에는 고소득층에게만 적용한다. 예로서 연소득 1억이상의 부유층만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이다. 수년간의 도입경험으로 새롭게 배우면서 적응해 가는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을 거쳐 진화할 것이다. 다음 과세대상을 둘로 구분한다. 하나는 개인종합과세이며 다른 하나는 법인의 종합과세로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Kaldor의 안대로 구 소득세와 신 소비세를 병합해 운용하는 합동세로 할 것이다. 소득세는 현행대로 적용할 것이며 허나 개인 종합세는 현재의 부가세와 판연이 다를 것이다. 즉 부가세는 구매시마다 10%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으나 종합소비세하에서는 그러한 구매시의 세금납부는 철폐되어 세금부담감을 완전 불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소비세로 인해 물건값이 상승해 소비자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반대하고 있는 데 이는 개인종합소비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한국에서의 개인종합세의 도입과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박종규, 지출세제 도입의 당위성과 문제, 2010, 납세연 포럼, 바른경제동호회, 한국조세연구원 발표).

개인종합소비세는 개인종합소득세의 과세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즉 소비세의 과표는 지난해에 소비한 소비총액을 신고토록 한다. 여기에서 사업자는 장부의 기장과 영수증을 제시토록 한다. 허나 요즘처럼 신용카드,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은 소비세 행정에 어려울 것이 없다. 먼저 지난해의 개인 소득액을 신고토록 한다. 그 내용은 임금, 봉급, 이윤, 자산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을 정확히 신고한다. 이러한 소득 즉 차변으로 하여 비저축분인 대변을 차감토록 한다. 즉 저축, 자산구입, 투자, 대부액, 채무상환, 예금, 등을 차감하면 소비액이 산출될 것이다. 이 경우의 소득은 소득세를 뺀 순 소득액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 소득부분을 차감 후의 소비세 과표가 결정되면 그 과표에서 각종 공제가 적용된다. 즉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소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즉 생필품의 소비, 내구재구입,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고정비용, 등이 과표 공제됨으로 이는 소득세와 하등 다

를 것이 없다.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이윤 및 자본수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이밖에 투자비용, 감가상각, 고정비용, 등을 공제토록 한다. 결국 과표공제후 과세율의 크기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는 현행의 필요한 세수액의 크기에 적합한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사료된다. 한국의 경우 15% 내지 20%로 해도 좋을 것이다.

결국 종합소비세의 목적은 저축과 투자를 증대시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세금을 덜 내고 싶으면 종래에는 소득을 감축해 절세와 피세를 했으나 이제 종합소비세하에서는 합법적으로 소비를 줄여 저축을 증대시켜 소비과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피세와 탈세가 없는 공정한 세제의 확립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내구재를 투자 또는 저축으로 보아 공제토록 하는데 이에 절세수단은 내구재구입에 과다 집중될 것을 염려 하는데 이러한 수오는 오히려 내구재 산업을 자극해 내수시장의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어 국민경제 발전에 득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 소비세는 현행의 부가세와도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부가세도 생필품에 비과세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에 과세됨으로 이는 유통과정에서 전가되어 최종적인 귀착은 소비자에게 그 세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소비세제도에서는 이러한 전가 귀착의 과정이 전혀 없다는데서 부가세와는 차원이 다른 개인이 부담하는 종합 소비세인 것이다. 이렇게 공정한 세금이 어디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편 소득세나 법인세에 있어 사업자들은 대차대조표작성에서 경비를 가급적 확대해 작성해 세금을 덜 내려할 것이다. 회사내의 사적인 경비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해외관광도 출장으로 처리한다. 이제 이러한 피세방법은 종합소비세의 도입으로 불식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운영의 필요경비를 정하고 허구적인 비용은 일체 배제한다. 즉 타 기업으로부터 구매한財(원료, 반제품, 임금, 등)에 대한 비용만을 공제토록 함으로 써 가공적인 비용확대적 피세도 감소할 것이다. 부가세 환급도 없어 질 것이다. 종합소비세로 正道 稅政은 보장될 것이다. 그 많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복잡하고 신기로운 장부처리기법도 필요가 없어 세금의 사회적 순응비용은 감소될 것이다. 다만 종합소비세하에서의 납세자 비용이 있다면 그것은 저축하고 근검절약하는 美德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경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비용으로 작용할 것이며 탈세나 부정비리의 비용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득세제하에서는 세제당국의 세법에 묶여 과세되어 타율적인 세부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종합소비세 하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자율적인 세부담을 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징세비용이 전무한 저비용의 과세방식으로 볼 수 있다. 왜냐면 소득세는 예로서 근소세는 이미 정해진 소득에 일정율의 세율적용으로 원천과세된다. 이러한 원천과세는 행정적으로 관할 세무서의 공적 관리로 위로부터의 타율성에 얽매 있는 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출세는 개인이 그때 그때 근검절약정신을 투입해 조금이라도 절약해 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소비액이 줄어 들어 세금부담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율적인 세부담을 할 수 있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가계형적 범주의 과세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한 근검절약의 미덕이 국민의 도리인 납세의무에 연계된 사회문화적인 審美性(aesthetism)을 찾아 볼 수 있다. 위로부터의 과세형식에서 밑으로 부터의 자율적인 과세형식은 바로 우리가 염원하는 자생적이고 민본적인 세제로서 새시대의 세금나라를 열어나아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양세(良稅)의 조건은 알기 쉽고 단순한 세제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 종합소비세는 앞으로 소득세를 흡수해 시행한다면 단일세(flat tax)가 될 수도 있다. 우선 소득세보다 그 세법에서 어려운 내용이 훨씬 줄어 들 것이다. 소득의 정확한 추정은 시점과 직종에 따른 소득종류의 다양성, 소득의 이전의 복잡성, 양도소득의 정확한 추정, 경비지출의 정확한 측정, 소득의 정확한 신고, 등등 수다한 난제는 세무행정의 복잡성과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출세는 이러한 세법시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예산절약은 곧 납세자 세부담을 감소 시킴을 뜻한다. 아무튼 단순세제로서의 지출세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수세인 것이다. 내가 소비한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함으로 그것은 내가 하기에 달려 있는 단수세인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종합소비세는 단순하고 알기 쉬운 이 새시대에 잘 맞는 시대적인 최적적인 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단순세제로 가는 길은 소득세와 세수면에서 소비세로 단일화하는 소비세수 확대방안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그 세수비율이 50 대 50이면 다음 해에는 이를 60 대 40으로 또 다음 해에는 70 대 30으로 소비세수 확대정책을 시행해 성공한다면 소비세의 단순세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그러한 세수확대정책의 주요수단은 세율의 증가일 것이다. 소비세의 세율을 누진화 함으로 써 즉 최고세율을 40% 내지 60%에 이르도록 해 누진 단일세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종합소비세가 도입 시행 된다면 그 결과 사적으로는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국민경제적으로는 저축과 자본축적을 증대시켜 사회경제의 확대재생산을 통해 번영의 길에 매진할 것이다. 한편 세무행정은 간소화되어 세무공무원의 감축을 통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출세는 소득세하에서의 관행이 되고 있는 소비지출의 증대를 허위적으로 가공해 신고하는 피세행태는 불식시킬 수 있다. 지출세하에서 소비자들은 소비지출을 감추는 아니 저축과 투자를 증대시키는 행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피세라기보다 경제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어 다 이익선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소득세제와는 달리 지출세는 피세나 탈세의 행동을 완전 제거하는 강한 세제로서 따라서 피세없는 고정된 세제이며 동시에 번영지향적인 새 시대의 良稅(good tax)로서 받아 드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자원고갈에 환경파괴시대와 인류 생명의 위기에 접하고 있다. 여기에 자원절약과 녹색성장을 촉구하는 시대에 이러한 종합소비세는 근검절약 정신으로 자원절약적인 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최근(2006)에는 미국에서 조세학자들이 New York 대학에 모여 종합소비세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있음은 21세기의 시대적 최적과세는 역시 개인종합소비세에서 찾아야 할 것임을 재삼 강조 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Kaldor의 지출세 간행후 미국에서는 세제합리화 이론에 소비세 중심의 간소한 세제로 발전하고 있다. 예로서 현금흐름의 세제(Cash Flow Tax System)를 제시한 Henry J. Aaron이라던지 Hall and Rabschka의 단일세(flat tax)라던지 D. Bradford의 X 조세 등은 모두 Kaldor의 지출세의 과세방식을 따르고 있음으로 써 그는 새시대의 소비세 사상의 원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대는 바뀌어 가고 있다. 소득에서 소비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절대주의 사상보다 심미적 다원주의를 존중하며 서로 나누고 함께 즐기는 삶으로 이행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소비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소득을 위주로 한 세제는 불합리 하며 나눔의 시대인 소비시대에 걸맞는 세제는 소비세이어야 하며 특히 저축과 근검절약 정신을 고양하는 지출세는 하나의 시대적 세제 패러다임이 아닐 수 없음을 이 책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이필우, 조세론, 법문사, 1994.

Auerbach, A. "Tax Reform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Vito Tanzi and Howell Zee, eds. Public Finance II, Stabilization and Growth, An Elgar Research Collection, Cheltenham, UK, 2011.

Bradford, D. Taxation, Wealth, and Saving, MIT Press, 2000.

Fisher, I. Constructive Income Taxation, New York, 1942.

Fisher, I. "The Double Taxation of Savings," *American Economic Review*, 29(1), 16-33.

Hall, R. and A. Rabushka. Low Tax, Simple Tax, Flat Tax, McGraw Hill Book Company, New York, London, 1983.

Hyman, D. Public Finance, A Contemporary Application of Theory to Policy, Thomson, South Western, 2008.

Pechman, J. ed. What Should Be Taxed: Income or Expenditure?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80.

Schmoelders, G. Finanz-und Steuerpsychologie, Rohwolt, 1970.